

17. 아파트 쓰레기 收去方式 改善에 관한 研究

대한주택공사 1991.5

대한주택공사에서는 5월 17일 아파트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분리 수거제 도입, 재활용품 수거 등 주로 제도적, 주민계몽적 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었던데 비해 쓰레기 배출의 최초 출발점이 되는 주택에서의 쓰레기 수거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축형식의 개선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는 연구결과로 평가된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쓰레기 배출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투입구 방식(더스트슈트)은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시설로서 지나치게 주민의 편리성만을 강조하여 주민의 편리성과 수거의 효율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쓰레기 투입방식은 주민의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는 매우 편리하지만

저층부 주거환경의 악화는 물론, 이를 수거·처리하는 과정을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어 수거효율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사회적 비용 부담의 가중,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청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회문제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투입구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기존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투입구 시설을 폐쇄하고 신축 아파트에서는 투입구 시설을 아예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기존의 관습과 다른 생활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으나, 연구진행과정에서 주민설문조사,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검토하고, 수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주민의 91.0%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축 아파트에서 쓰레기 투입구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쓰레기 투입구를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경우에는 34.1%만이 찬성했지만, 이미 투입구를 폐쇄한 아파트주민은 48.2%가 찬성하고 31%만이 반대의사를 나타내므로써 투입구 폐쇄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이 있으나 일단 폐쇄하고 나면 불편함보다 개선된 사항에 대해 더욱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의 아파트에서 투입구를 폐쇄하고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모아 놓으므로써 수거작업이 용이하여 신속한 수거 및 악취제거 등의 장점 때문에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의 환경청소협회 산하 환경미화원의 경우 90년 7월까지 118%에 달하던 이직률이 쓰레기 투입구 폐쇄가 이루어진 하반기에는 6%로 크게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요인은 환경미화원의 직업기피현상을 완화시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고 단지내의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를 직접 갖다 버리게 하는 방식의 성공여부는 쓰레기투입구폐쇄에 따르는 적절한

후속조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연구에서 제시한 쓰레기 분리배출의 기준은 연탄난방의 경우 연탄재,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구분하고, 유류난방의 경우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구분되, 두 경우 모두 소각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반쓰레기를 가연성과 비가연성 쓰레기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환경처의 분리 기준안을 따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입구를 폐쇄한 후 외부에 설치하게 될 수거함은 각각의 분리기준에 따라 구분 설치하도록 하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적정용량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옥외수거함은 쓰레기 종류별로 색상을 구분하여 가연성은 분홍색 계통, 비가연성은 짙은색 계통, 연탄재는 갈색 계통으로 용기의 재질, 손잡이 위치, 하부의 바퀴부착과 함께 수거함에 붙이는 표찰까지 예시하는 등 실제 적용시 혼선이 없고 입주자나 수거자의 적용이 쉽도록 세부사항까지 다루었다.

옥외수거함을 모아놓는 설치소는 주거동의 배치형식에 따라 1~3개동에 1개소를 배치하고, 위치 요건으로서는 청소차량의 주차공간 침해방지, 각 주동입구에서 100m 이내에 설치, 주민동선의 도로

횡단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도로조건을 규정하고 설치장소의 지붕, 주변조경, 물청소를 위한 수전 및 배수구, 바닥의 재질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한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주공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설계자

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연구결과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쓰레기투입구 삭제여부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현행법규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별도보고서를 각 지자체에 송부,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